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6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이용선・김문수・허 영

박지원・박용갑・김 윤

허성무 • 박희승 • 이재강

채현일 · 오세희 · 정준호

강준현 • 이재명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국고 지원)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 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5조의2(국고 지원) 국가는 재
	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
	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
	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
	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
	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
	있다.